물류관리사 기출문제집 2022년 초판 정오표

(2022년 1월 10일 발행)

p86. 제25회 제2교시 법규 68번 해설 ③④ 일부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①~② 생략 ③ 시·도지사 → 산업통산자원부장관 ④ 시·도지사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①~② 생략 ③ 시·도지사, 2년마다 →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매년 ④ 시·도지사, 1월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2월

p87. 제25회 제2교시 법규 70번 해설 일부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㉡ 중복될 수 있다 → 중복될 수 없다 ㉣ 산업통산자원부장관 → 중소벤처기업부장관	㉡ 중복될 수 있다 → 중복될 수 없다 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→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p87. 제25회 제2교시 법규 71번 해설 ⑤ 일부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⑤ 시·도지사 → 산업통산자원부장관	⑤ 시·도지사 →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p89. 제25회 제2교시 법규 76번 해설 법 개정으로 추가 설명

수정 전	수정 후
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	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 ※ 관련 조문(시행령 제10조 제15항) 삭제로(2021.9.24, 개정)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.

p182. 제24회 제2교시 법규 76번 해설 법 개정으로 추가 설명

수정 전	수정 후
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(시행령 제10조 제5항).	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 ※ 관련 조문(시행령 제10조 제15항) 삭제로(2021.9.24, 개정)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.

p363. 제22회 제2교시 법규 48번 문제 ⑤번 일부 삭제 및 해설 일부 삭제

수정 전	수정 후
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~~**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**~~을 ~~받아~~야 한다. [해설]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인접한 시·도의 시·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~~**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**~~야 한다(법 제15조 제2항).	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해설]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인접한 시·도의 시·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(법 제15조 제2항).

p375. 제22회 제2교시 법규 70번 문제 ③ 및 해설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③ 법인 소재지의 변경 [해설]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(시행규칙 제5조 제4항). 1. 법인의 명칭·**대표자의 성명·소재지(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) 및 상호** 2. **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 매장면적의 1/10 이상의 변경** 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 4. 신규 추가	③ 법인 **주소**의 변경 [해설]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(시행규칙 제5조 제4항). 1. 법인의 명칭, **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,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** 2. **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 변경등록한 경우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** 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 4. **점포의 소재지·상호 변경**

p460. 제24회 제2교시 법규 76번 해설 법 개정으로 추가 설명

수정 전	수정 후
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(시행령 제10조 제5항).	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 **※ 관련 조문(시행령 제10조 제15항) 삭제로(2021.9.24, 개정)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.**

p460. 제21회 제2교시 법규 43번 법 개정으로 문제의 ④ 일부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④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**없**다.	④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**있**다.